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24 선고 2023가단26655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

담당변호사 오정현

변 론 종 결 2024. 4. 3.

판 결 선 고 2024. 4. 24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. 5. 24. 접수 제176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, 피고는 C의 시어머니이다.

나. 원고는 2017. 5. 3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달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, 2022. 5. 24.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가 2017. 5. 3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피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의 소송대리권 흠결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주장

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소송대리권 수여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.

나. 판단

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2024. 3. 21.경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전화 통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.

그러나 갑 4,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원고가 자필로 서명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소송대리권 수여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22. 5. 24.경 D와 C이 찾아와 ‘원고가 연로하고 관절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재산이 있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두자’라고 제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.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,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- 1)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).
- 2) 갑 4,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,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김수영

별지